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안

제출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또는 공공의 안전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있어서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하는 등 통합적으로 현장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양경찰청장은 수사기관의 장을 통하여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경찰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을 전시·사변의 발생으로 전국적인 해양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이나 재난·테러 등이 발생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등으로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 및 수사부서의 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지휘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함

나.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를 각 호로 나누어 정함(안 제2조제1항)

-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1호)
- 2) 해양에서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협이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2호)
- 3) 국가중요시설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는 사건(안 제2조제1항제3호)
- 4)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안 제2조제1항제4호)

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개시할 필요가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도록 함(안 제2조제2항)

라.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임을 명시함(안

제3조)

마. 해양경찰청장이 수사부서의 장에게 구체적 지휘할 때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하며,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바. 수사부서의 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수사지휘는 서면으로 해야 하고 긴급한 상황 등의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간편한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21. 1. 12. ~ 1.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안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① 「해양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건으로 한다.

1.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전국적인 해양치안유지가 필요한 사건
2. 해양에서 재난, 테러 등이 발생하여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해(危害)나 범죄로 인한 피해의 급속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사건
3. 국가중요시설의 파괴·기능마비, 대규모 집단의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의 자원을 대규모로 동원할 필요가 있

는 사건

4. 해양에서 연쇄적·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거나 광역화된 범죄에 대하여 경찰력의 집중적인 배치, 해양경찰 각 기능의 종합적 대응 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의 공조가 필요한 사건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해 구체적 지휘·감독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 등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제3조(수사부서의 장)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경찰청 수사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사국장을 말한다.

제4조(수사지휘의 방식)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이하 “수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한 구체적 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제5조(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 ①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은 각 지방해양경찰청장과 해양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부서의 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

에는 서면으로 지휘해야 한다.

③ 수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지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구두나 전화 등 서면 외의 방식으로 지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신속하게 서면으로 지휘내용을 송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수사과	
연 락 처	(032) 835 - 2529